

changwon city council

시민의 눈과 마음으로 함께하는 열린 의회

제11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2. 1. 24.)

창원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창원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 심사보고서

2022. 1. 24. (월)  
기획행정위원회

## 1. 심사 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2. 1. 6. 김종대 의원 등 18명
- 나. 회부일자 : 2022. 1. 6.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11회 임시회 제1차(2022. 1. 24.)  
기획행정위원회 상정의결 (의안번호 제956호)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김종대 의원)

### 가. 제안 이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의 처리 및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 침해행위를 예방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 나.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공익신고센터의 설치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제7조)
-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제13조)
- 우수기업 선정 및 환경조성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 ~ 제16조)

- 공익신고책임관 및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7조 및 제18조)
- 포상 및 민원사무의 우선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9조 및 제20조)

#### 다. 참고사항

- 관련법규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입법예고(2022. 1. 6. ~ 1. 10.) 결과 : 제출의견 없음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경희)

#### □ 제정목적

- 본 조례안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과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 기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지역사회 환경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3조(시장의 책무)에서는 시장은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함
- 안 제4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에서는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해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민원과 혼재될 수 있는 공익신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익신고자 등 지원 및 보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안 제5조(공익신고의 처리)에서는 공익신고의 조사 기간과 통보 및 이송 등 공익제보의 처리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

○ 안 제6조(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에서는 공익신고자 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보장 및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할 경우에는 징계 조치함을 규정함

○ 안 제7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에서는 내부 공익신고인 경우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신청 할 수 있으며 안내하여야 함을 규정함

- 내부 공익신고자로 한정하였는데 내부 공익신고자를 강력하게 보호 하도록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고려하였을 때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공익신고자 보호법 】**

제26조(보상금) ① 내부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이하생략)

○ 안 제8조(공익신고자보호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서는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자보호위원회를 두는 것을 규정함

- 안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외부위원이 50% 이상이 되도록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1회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안 제10조(위원의 해촉)에서는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서는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 제고 등을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12조(회의운영)에서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안 제13조(수당 등)에서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을 정함
- 안 제14조(우수기업 선정)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을 정관 또는 사규에 명시하는 등 공익신고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는 기업을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안 제15조(우수기업 우대)에서는 우수기업에 대하여 세무조사 유예, 계약 우대, 홍보 등 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음을 규정
  - 선정된 우수기업에 대한 홍보 등 지원 시책이 실질적으로 기업이 공익신고자 보호 등을 규정할 수 있는 유인 요인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16조(환경조성사업 선정 및 지원)에서는 공익침해행위나 공익신고가

자주 발생하는 분야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 환경조성 사업으로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공익침해요인이 해소될 수 있는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과 보조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17조(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및 업무)에서는 공익신고자 등 보호 및 지원과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공익신고책임관으로 감사업무 부서장을 지정하도록 규정함

○ 안 제18조(민간협력)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민간협력 강화를 위하여 기업 및 교육기관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안 제19조(포상)에서는 공익제보 등으로 인하여 시 재정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 법률을 준용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음

○ 안 제20조(민원사무의 우선처리)에서는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무는 우선 처리해야 함을 규정함

## □ 종합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패의 발생 및 공익 침해 예방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지역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하

여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보임

- 국가 차원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 민간 영역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통하여 신고자를 보호하는 이원화된 법체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경우에도 부패신고는 「창원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공익신고의 경우에는 「창원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규정」으로 되어 있음

- 국민권익위는 부패·공익신고 관련 5개 법률에 산재한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 단일법 제정 추진계획 발표(2022. 1. 6.)

⇒ (주요내용)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중심으로 보호·보상 기준의 통일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법 적용에 대한 혼란을 방지

※ 5개 법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우리시에서는 2021년 기준으로 최근 4년간 약 15,842건이 접수되어 자체종결 10,239건을 제외하고 인허가처분 취소, 과징금·과태료 부과, 수사기관 송부 등의 형태로 6,108건 정도가 처리되고 있는 실정임

<참고자료 ; 공익신고 처리현황(최근 4년)>

- 정과 의리를 중요시하는 우리 사회의 조직문화로 내부고발이 조직의

이익에 반하는 배신행위로 간주되고 신고자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에 대한 혜택 부여(안 제15조)나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활성화(안 제18조)를 통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시민의 자율적 참여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입법적 의의가 크다고 사료됨

- 다만, 공익신고자 보호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안 제6조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규정을 보면 비밀보장, 불이익 금지 및 신고내용 누설 시 징계 등 필요한 조치 규정이 있는데 공익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와 국민권익위원회와의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14조 및 제15조에서 공익신고자 등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기업을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지정 및 혜택을 부여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수정의견을 낸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지방세 세무조사시 혜택을 부여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향후 「창원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개정을 통하여 세무조사 면제 등 구체적인 혜택을 강구하여 운용하는 것이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공익신고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현행 법령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시의 소관사무에 대해 시가 직접 신고를 받아 조사하는 경우 소극적인 조사로 이어질 여지가 있어,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조례의 운영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참 고 창원시 공익신고 처리 현황(최근 4년)

(단위 : 건, 천원)

년도	접수 건수	처리내역					보상·포상금	
		행정처분			수사기관 송부·송치	자체 종결		
		인허가취소 등	과징금·과태료등					
			건수	건수			부과금액	건수
계	15,842	421	5,093	527,636	594	10,239	4,153	134,193
2018년	3,790	86	1,447	146,906	182	2,237	1,058	34,193
2019년	4,192	77	975	89,865	124	3,146	1,121	34,655
2020년	4,558	128	1,311	131,089	202	3,030	991	33,155
2021년	3,302	130	1,360	159,776	86	1,826	983	32,190

※ 중복처리 포함

4. 질의·답변 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 요지 : 기재 생략

6. 심사 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부대의견, 건의 사항, 촉구사항 등)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1. 창원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창원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최종안)

## 창원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956호 관련
----------	----------

발의일자 : 2022. 1. 6.

발 의 자 : 기획행정위원장

### 1. 수정 이유

- 공익신고에 관한 우수기업 우대사항 중 세무조사 유예 조항은 공익 신고 환경 조성만으로 선정된 우수기업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조달계약 등 우대조항은 관련법상 우대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부서 수정안대로 삭제함

### 2. 주요 수정내용

-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함

# 창원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창원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함

##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p>제15조(우수기업 우대) ① <u>시장은 우수기업에 대하여 「창원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에 따라 일정 기간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다.</u></p> <p>② <u>시장은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우수기업으로 우대할 수 있다.</u></p> <p>③ (생략)</p>	<p>제15조(우수기업 우대) &lt;삭제&gt;</p> <p>&lt;삭제&gt;</p> <p>(현행 제3항과 같음)</p>

## 창원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의 처리 및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 침해행위를 예방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이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인정된 기업을 말한다.
2. “공익신고자 보호 환경조성사업”이란 공익침해 취약 분야 중 공익신고 처리 체계 및 신고자 보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효과적인 공익신고 처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공익신고의 원활한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창원시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공익신고의 처리)** ① 시장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받은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해야 한다.

② 공익신고의 조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시장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관 업무가 아닌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받은 경우에는 바로 해당 업무의 소관 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제6조(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① 시장은 공익신고자 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 등에 따른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 등이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③ 시장은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 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체절차 등을 안내해야 한다.

④ 시장은 공익신고의 접수·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7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시장은 공익신고 처리 결과 시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내부 공익신고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제8조(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한 관계 기관·단체 등과의 사회적 관계망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4.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익신고자 보호 환경조성사업(이하 “환경조성사업”이라 한다)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이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신고처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익신고자 보호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인 경우
2. 위원이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의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12조의 재적위원 수를 계산하는 경우 해당 안건에는 이를 제외한다.

**제12조(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칠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우수기업 선정)** ① 시장은 공익신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의 정관 또는 사규 명시
2. 공익신고 접수·처리업무 담당 부서 및 신고 상담창구 설치

3. 공익신고 접수·처리 절차 등 시스템 구축
4. 임직원 대상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실시
5.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제도 도입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한 시책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5조(우수기업 우대)** 시장은 우수기업에 대한 홍보 지원 등 우대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6조(환경조성사업 선정 및 지원)** ① 시장은 공익침해행위 및 공익신고가 자주 발생하는 분야를 대상으로 주민 또는 시에 소재하는 기관과 단체 등의 신청을 받아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조성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환경조성사업 신청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및 업무)** ① 시장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공익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창원시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18조(민간협력)** ①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민간협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체 구성·운영
2.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지원 등

②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며 이 프로그램의 시행에 참여하는 기업

및 교육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포상)**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큰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민원사무의 우선 처리)** 시장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